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6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5. 19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: 2023. 5. 25.
- 다. 상정일자: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6. 15.)
상정, 심사, 보류
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6. 2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문화예술과장 이주미】

가. 제안이유

이사회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, 이사장(이사회 의장) 부재 시 부이사장의 직무대행을 통한 이사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임원 ‘부이사장(비상임)’ 직위 신설 및 1명 추가(안 제7조)
- 이사회 구성원 부이사장 추가, 이사장 직무대행자 “대표이사 → 부이사장”

으로 변경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3년 5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, 이사장(이사회 의장) 부재 시 부이사장의 직무대행을 통한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- 조문별로 살펴보면, 안 제7조는 재단 임원진에 비상임직 ‘부이사장’의 직위를 신설하여 임원 1명을 추가하는 내용임. 안 제9조는 이사회 구성원에 부이사장을 추가하고,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기존 “대표이사”를 “부이사장”으로 변경하는 내용임.
- 현재 마포문화재단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며, 명예직(비상임)임.

※ 이사장 및 대표이사 역할의 구분

구분	이사장	대표이사
상근여부	비상임	상임
권한	이사회 의장(이사회 소집)	재단 대표(경영 총괄)

- 대표이는 재단 업무를 통합하고 경영을 총괄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, 이사장 직무대행 시 현안업무 전념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.

※ 「마포문화재단 정관」 제7조(이사장)

② 다만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※ 「마포문화재단 정관」 제8조(대표이사)

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합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- 한편, 부이사장 직위 신설이 가능한 지에 대해 살펴보면, 상위법인 「지방

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¹⁾에는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연기관의 형태, 특성, 업무내용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.

- 또한, 마포문화재단은 2021년 공익법인으로 지정 및 신고하였으며, 「공익법인법」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임원의 수 증감이 가능함.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를 지칭하나 「서울시 사무위임 규정(규칙)」에서 비영리 법인(재단)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 위임하고 있음.

※ 「공익법인법」 제5조(임원 등)

-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,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 할 수 있다.

※ 「서울시 사무위임 규정(규칙)」

주관부서	사무명	근거 법령	수임기관
문화예술과	2.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정관변경 허가(명칭, 목적,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) 나. 법인사무의 검사·감독 다.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6조 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제1항) ○ 같은 규칙 제8조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제1항) ○ 같은 규칙 제10조(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제1항) 	구청장

- 참고로, 부이사장 직위를 신설한 타 재단 사례는 창원문화재단,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, 통영국제음악재단 등이 있음.
- 이와 같이 살펴본 바,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정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, 이사장(이사회 의장) 부재 시 부이사장의 직무대행을 통한 이사회를 원활하게 운영코자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1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9조(임원)

- ① 출자·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(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둔다. 다만,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·출연 기관별 형태,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
- 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.

첨부 1

타 재단 적용사례

○ 부이사장 직위 신설

- ① 창원문화재단, ②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, ③ 통영국제음악재단

※ 「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7조(임원)

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,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
※ 「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임원)

① 재단은 이사장 1명, 부이사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,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※ 「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임원)

① 임원은 이사장과 부이사장, 대표,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.

○ 임원 수 증원

- (16명) 재단법인 남도장터
- (17명) ① 천안시 복지재단, ② 전라남도 관광재단
- (18명) ① 부천문화재단, ② 춘천문화재단
- (20명) ① 경기문화재단, ② 강원문화재단, ③ 포천문화재단, ④ 노원복지재단

※ 「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임원)

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, 9명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
※ 「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임원)

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한다.

※ 「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7조(임원 등)

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를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
※ 「춘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6조(임원)

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
※ 「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임원)

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, 대표이사,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

※ 「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6조(임원)

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, 이사는 지역문화 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.

※ 「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7조(임원)

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,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.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(약칭: 지방출자출연법)

제9조(임원)

- ① 출자·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(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둔다. 다만,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·출연 기관별 형태,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
- ②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(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)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.
- ③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
 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
 3.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-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출자·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·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. 이 경우 감사가 출자·출연 기관을 대표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5. 토론요지: 없 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8. 기 타: 없 음